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_별지

2020. 09

이륜자동차보험

1. 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이륜자동차보험
3. 보험 가입대상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
4.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 가. 자동차
 -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 다.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5.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납입주기
 - 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 1년만기, 2년만기 및 3년만기
 - 나. 보험료납입주기 : 일시납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특약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에 첨부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벌금비용 특별약관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9. 기타 사항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보험의 인수심사, 보험금 심사 혹은 요율산출 등 다른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다.